

입사지원서의 “지역구분” 상에 “비수도권” 지역인재 판단 기준

- ※ 아래 제시되는 기준은 관련 법령 및 국토부 지침 등을 참고한 것으로 본인이 비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인재 해당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반드시 채용문의게시판을 이용하여 채용담당자의 확답을 받은 후 진행하실 것
- ※ 아울러 입사지원서 중 “대학교 졸업예정” 을 선택하려면, 서류접수 마감일 (9.7일) 기준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해야 하므로, 반드시 학교 행정실 등에 문의 후 선택(발급 불가 시 재학 선택)

□ 입사지원서의 “지역구분” 에 “비수도권” 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은 제외)을 기준으로 서울·경기·인천·해외(외국대학의 국내분교 포함)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(예정), 재학(휴학) 또는 중퇴한 자이어야 함

- ①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『고등교육법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(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(사이버대학은 제외), 기술대학, 각종학교)
- ② 『고등교육법』 제24조 상의 분교의 경우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 (분교가 아닐 경우 본교 소재지 기준 판단)
 - * (분교 운영 학교) 건국대, 고려대, 동국대, 상명대, 연세대, 한양대, 홍익대 등
- ③ 과학기술대학,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및 광주과학기술원
-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

※ 위 ①~④의 기준에 따른 소재지를 “최종학력 학교 소재지” 에서 선택하면 되며, **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, 사이버·디지털 대학 등 「평생교육법」 상의 평생교육시설 등은 “비수도권” 에 해당되지 않음**